

#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진입을 앞둔 1999년 프랑스는 결혼과 단순동거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시민연대계약(PACS)제도를 도입하였다. PACS는 '68 혁명' 이후 기성 권위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일탈 욕구와 기존 권위로부터 소외된 성 소수자들의 인정 욕구에 국가가 반응하며 도입되었는데, 최근에는 제도가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혜택은 결혼과 유사하면서 결합 및 결합의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혼보다 훨씬 작다는 실제적인 장점으로 인해 크게 대중화되고 있다.

## 머리말

근대 결혼제도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와 가치관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가 승인한 '결혼'(marriage)을 통해 형성된 가족에게만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1960년대 말 '68혁명'을 계기로 젊은이들이 국가와 기성 권위에 도전하면서 기존의 결혼 및 가족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늘어나면서 혼인율이 감소하고 이혼율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성(同性)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지난 20세기 말부터 '동거(cohabitation)'를 새로운 가족구성의 원리로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특히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은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이성커플 사이에서도 대중화되면서 단순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대안적 가족구성 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PACS의 도입 배경 및 현황, PACS를 통해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PACS의 도입 배경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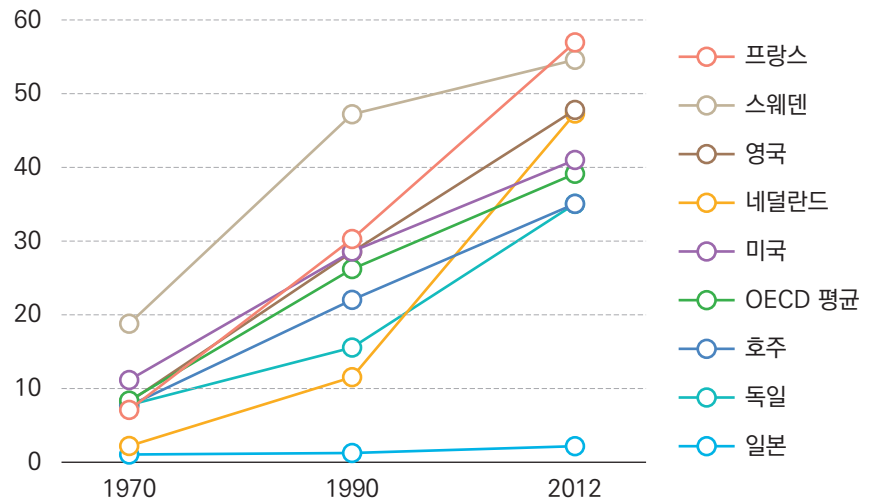
### | PACS의 도입 배경

결혼과 동거의 중간 형태로서 PACS는, 기성 권위에 대항하는 젊은 세대의 일탈 욕구와 기존 권위로부터 소외된 성 소수자들의 인정 욕구에 국가가 반응하며 등장하였다.

우선 프랑스 젊은이들의 기성 권위에 대한 도전은 사적 영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동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말 이후 연간 혼인건수는 1969년 380,000건에서 1994년 253,000건까지 떨어졌으며, 결혼하지 않고 동거부터 시작한 커플의 비중은 1960년대 16%에서 1990년대 87%까지 증가하였다. 그 결과 결혼제도 바깥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전체 출산 중 혼외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5~65년 기간에 약 6%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30%, 1990년 말에는 40%까지 올라갔다(그림 1) 참조. PACS 도입 직전인 1998년 프랑스의 커플 비중을 동거/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나누어 1990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커플 중 유자녀 동거커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9%에서 1998년 7.3%로 증가한 반면 유자녀 결혼커플 비중은 41.4%에서 34.9%로 감소하였다. 즉,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동거커플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사회적 틀 안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1990년대 말 프랑스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부터 시작하는 커플의 비중은 87%, 혼외출산 비중은 40%까지 상승하여, 동거커플 자체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사회적 틀 안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던 상황이었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도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별에 상관없이 동반자의 파트너십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동거계약제도가 등장하였다.

그림 1 OECD 주요 국가의 혼외 출산율 변화 추이



출처: OECD, Eurostat("Carriage and horse", 2016.1.16. The Economist 기사에서 재인용)

한편,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성 정체성을 숨기고 지내오던 동성애자들의 인정 욕구는 좌파 진보세력의 사회변혁 의지와 결합하여 PACS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초 AIDS 대유행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자들도 배타적이고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연애관계도 이성애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좌파 진보정당이 수용하여 정치이슈화하면서 성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 나아가 가족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었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반자의 파트너십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PACS에 관한 법률이 1999년 프랑스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렇듯 PACS는 본래 동성커플의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크지만, 이성커플 사이에서도 빠르게 대중화되었다. 프랑스 정부가 PACS 등록자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을 법으로 금지하여 공식자료는 집계되어 있지 않지만,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PACS 등록자 중 동성커플 비율은 도입 직후인 2000년 45~50%에서 2004년 15~2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9년에는 5%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9년 현재 PACS 등록 커플 중 95% 이상이 이성커플이라는 의미로, PACS와 유사한 제도인 네덜란드의 동반자등록제에 이성커플 등록률이 13% 정도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 PACS를 통해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주요 내용

그렇다면 굳이 PACS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이성커플까지도 왜 결혼 대신 PACS를 선택하는 것일까? 프랑스에서 커플 간 결합 방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결혼은 15세 이상 여성과 18세 이상 남성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청의 시장 혹은 부시장 앞에서 혼인선서를 하고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후(civil ceremony) 성당 등 종교기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religious ceremony)이 일반적이며,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 PACS는 동거를 원하는 이성 혹은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서로 상대방과 혈연관계가 아니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 혹은 PACS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만 증명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파트너 중 한 명이라도 결합의 해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에 알리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헤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동거는 두 사람이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커플 간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으며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공적인 절차를 전혀 거칠 필요가 없다.

한편, 2000년대 중반 관련 법의 개정으로 PACS 커플에게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결혼 커플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CS에 등록된 커플은 소득세, 사회보장급여 등에 있어서 결혼한 커플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또한, 동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나 유족연금 승계권은 제한되어 있지만, 동반자와 같이 살던 곳에서의 거주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부의 친권만 확인되면 공동양육권 획득에 문제가 없다.

**| 결합 기간 동안의 권리 및 의무의 주요 내용**

- 소득세 : 프랑스에서 결혼한 커플은 공동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 PACS 커플의 경우, 1999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등록된 지 3년째 되는 해부터 공동납세가 가능했으나, 2005년 Finance Act가 통과되면서 PACS에 등록된 바로 그 해부터 공동납세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반면, 단순동거 커플의 경우 각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
- 부채 : 결혼 커플과 PACS 커플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반면, 단순동거 커플은 생활비를 자율적으로 부담하며 부채에 대해서도 각자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사회보장 급여 : 결혼 커플과 PACS 커플은 서로에 대한 물질적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본인뿐만 아니라 파트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한 사람이 실업에 처한 경우 다른 한 사람이 부양 능력이 있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순동거 커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한해서만 본인의 사회보장 혜택이 파트너에게 적용된다.
- 휴가권 : 결혼 커플과 PACS 커플에게는 파트너와 동시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단순동거인에게는 동시 휴가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시민권 : 결혼과 달리, 외국인이 프랑스로 PACS에 등록한다고 해서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PACS에 등록된 다음 1년이 지나면 매년 갱신이 필요한 임시거주권이 발급되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결합 해소 이후의 권리 및 의무의 주요 내용**

- 재산권 : 프랑스에서는 별도의 혼인재산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결혼 커플에 대해 법정 부부재산제가 적용된다. 즉,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소유로 간주되어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PACS는 등록 후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통 각자 절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 공동소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순동거 커플의 경우 각자가 형성한 재산은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각자에게 귀속된다.
- 상속권 : PACS 커플은 법정 상속권에 있어 결혼한 부부나 직계 가족과 같은 지위를 누리질 못 한다. 다만, PACS 등록 후 형성된 재산 중 본인의 몫을 상속 받거나 유언에 의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데, 상속 받는 경우 단순동거 커플보다는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 거주권 :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집이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PACS 파트너에게는 물질적 부양 의무에서 파생된 거주권만 보장되는데, 예를 들어 커플이 임대차 주택에 거주하다가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파트너가 바로 임차권을 승계한다. 한편, 단순동거인 경우 일 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만 거주권이 보장된다.
- 퇴직연금 : 결혼 커플은 배우자가 사망해 혼자 된 경우 유족연금 형태로 배우자의 연금을 승계 받지만, PACS 커플이나 단순동거 커플은 파트너의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없다.
- 위자료 : 결혼과 달리 PACS나 단순동거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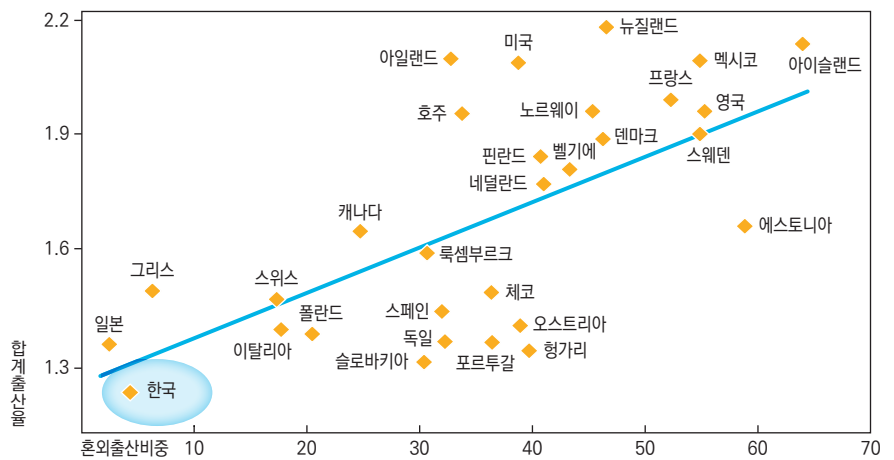
- 아버지의 친권 : 결혼과 달리 PACS 중 낳은 아이에 대해 부는 친권을 자동으로 승계하지 못하며,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친권이 성립한다.
- 공동양육권 : 결혼, PACS, 단순동거를 통해 아이를 낳은 모든 비혼부가 부의 친권 성립 후 1년 이내라면 자동으로 공동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다.
- 성(姓)의 승계 : 결혼, PACS, 단순동거 상관없이 부의 친권이 확립된 후라면 부모의 상의 하에 아이가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PACS 도입 후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사회적 양육책임 강화가 합계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PACS는 밑에서부터 분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학적 선순환을 성취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의 동거계약제인 PACS는 사회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결혼과 유사하면서 결합 및 결합의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혼보다 훨씬 작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도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한편,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동거율과 혼외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합계출산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그림 2 참조), 저출산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형화된 가족의 틀이 공고할수록 사람들이 가족구성에 부담을 느끼고, 가족의 틀이 느슨할수록 오히려 부담 없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을 고민함에 있어, 프랑스의 PACS는 밑에서부터 분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학적 선순환을 성취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OECD 주요 국가의 혼외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출처: Ostner and Schmitt(“프랑스 대통령 부부도, 호주 여성 총리도 동거 커플”. 2012.9.12. 경향신문 기사에서 재인용)

**출처**

- 김수현 (2003). 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와 그 법적 수용. 프랑스문화예술연구, 5(1), pp. 33-52.
- “프랑스 대통령 부부도, 호주 여성 총리도 동거 커플”. (2012.9.12.)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421571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42157105)에서 2016.3.29. 인출.
- Godard, J. (2007). PACS Seven Years On: Is It Moving Towards Marri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21(3), pp. 310-321.
- Martin, C., & Thery, I. (2001). The PACS and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F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15(1), pp. 135-158.
- Perelli-Harris, B., & Gassen, N. S. (2012). How Similar are Cohabitation and Marriage? Legal Approaches to Cohabitation across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3), pp. 435-467.
- “Carriage and Horse”. (2016.1.16.) The Economist 기사. <http://www.economist.com/news/international/21688382-births-out-wedlock-are-becoming-norm-how-should-governments-respond-carriage-and> 에서 2015.3.29. 인출
- “In France, Civil Unions Gain Favor Over Marriage”. (2010.12.15.) The New York Times 기사. <http://www.nytimes.com/2010/12/16/world/europe/16france.html> 에서 2016.3.29. 인출